#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6417 제출연월일: 2022. 9.

제 출 자: 대구광역시장

### 1. 개정이유

가.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('22. 7월)에 따라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

나. 솔라시티 기금 존속기한 만료('21.12.31.)에 따라 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솔라시티 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(안 제16조제1항)
- 나. 솔라시티 위원회의 기능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16조)
- 다. 솔라시티 위원회 회의개최 변경(안 제18조)
  - 매년 1회 이상 개최 원칙 →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라. 존속기한이 만료된 솔라시티기금 관련 규정 삭제(안 제25조 ~ 제28조)
- 마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0조(※ 붙임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### 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0. ~ 8. 30.(20일간)
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- 4) 갑질영향심사: 개선의견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- 6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의는"을 "뜻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"신·재생에너지"라 함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.

제3조제5호 전단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.

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4호 중 "인·허가"를 "인허가"로 하며, 같은 조 제15호 중 "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"를 "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13. "설치의무기관"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
제5조제2항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9호 중 "제5장"을 "제5장(제21조부터 제24조까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"을 "제1항 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"으로, "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솔라시티"를 "제16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에"를 "법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설비보급은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"를 "설비

보급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노력하 여야"를 "노력하여야"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"행·재정적"을 "행정적·재정적"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솔라시티 위원회) ① 에너지절약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,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.

- 1.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
- 2.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
- 3.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
- 4. 에너지 행정의 민·관 협력 방안 마련
- 5.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제1항 본문 중 "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"을 "위원장"으로. "때에는"을 "때"로 한다.

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공부문"을 "시장은 공공부문"으로 한다. 제24조제2항 중 "요청 할"을 "요청할"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"솔라시티기금 설치 및 에너지시책 추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"을 "에너지시책 추진 관련 지원"으로 한다.

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 혀 했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3조(정의) -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--- 뜻은 ------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"신·재생에너지"라 함은</u> 4. "신·재생에너지"라 함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·이용·보급 촉진법」(이하 ・이용・보급촉진법」제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 다. 다. 5. "연료"라 함은 석유·석탄· 가스・신・재생에너지 기타 열 ----- 그 밖의 ---------. <u>다</u>만, 제품의 원 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. 다 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. 을 제외한다. 6. ~ 12. (생략) 6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"설치의무기관"이라 함은 13. "설치의무기관"이라 함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6 ·이용·보급촉진법」제12조제 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. 14. "담당공무원"이라 함은 건 축법령에 의거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기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ㆍ허가 등을 - 인허가-----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

- 15. "센터"라 함은 <u>「신에너지</u>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 급촉진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·재생에너지 센터를 말한다.
- 16. · 17. (생략)

제5조(구청장·군수의 책무) ① (생략)

②구청장·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솔라시티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<u>감안하여</u>자체적으로 솔라시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역에너지계획) ① (생 략)

- ②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~ 8. (생략)
- 9. <u>제5장</u>의 부문별 에너지시책의 활성화 대책
- 10. (생략)
- ③ (생 략)
-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솔라시티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후 확정한다.

| 15 <u>법 제31조 및 영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9조에 따른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16. • 17. (현행과 같음)   |
| 제5조(구청장・군수의 책무)① (현  |
| 행과 같음)               |
| <b>2</b>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고려하여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제9조(지역에너지계획) ① (현행과  |
| 같음)                  |
| 2                    |
| ·.                   |
| 1. ~ 8. (현행과 같음)     |
| 9. 제5장(제21조부터 제24조까  |
| <u>지)</u>            |
| 10.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|
|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     |
|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제      |
| 16조에 따른              |
| ·                    |

#### ⑤ · ⑥ (생략)

제12조(신·재생에너지 보급) ①시 장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시장은 솔라시티 조성 및 신·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대상기관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은「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 행령」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 센터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- ③ ~ ⑤ (생 략)
- ⑥시장은 실용화된 신·재생에너 지 설비의 보급 지원을 위하여 <u>노</u> 력하 여야 한다.
- 제13조(솔라시티 시범지역 지정) ① ·② (생 략)
  - ③시장은 시범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행·재정적</u>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6조(솔라시티 위원회의 구성) ①
  시장은 에너지절약계획 및 시책
  등을 자문·심의·조정하기 위하
  여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

|              | ⑤·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           | 12조(신・재생에너지 보급) ①        |
|              | 법에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·.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②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설비보급은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노력하여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○;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           | -<br>13조(솔라시티 시범지역 지정) ① |
| ·            | •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③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<u>행정적·재정적</u>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           | ·<br>16조(솔라시티 위원회) ① 에너지 |
| <u>- 'II</u> | 절약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한 시장       |
|              | 의 자문에 응하고, 심의·조정하기       |
|              |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 성한다.

③ 위원은 시와 자치구·군 공무 원, 시의회의원, 시 교육공무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하다.

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또는 경 << 제> 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(개정 2011. 12. 20 조례 제4306호)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| <삭 제> 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시의 에너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 관이 된다.

솔라시티 위원회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 조 례」제8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 영할 수 있다.

\_\_<삭 제>

<삭 제>

제1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.

- 1.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및 평가
- 2.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심의
- 3. 지역에너지계획의 심의
- 4. 에너지 행정의 민·관 협력 방 안 마련
- 5.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
- 6. 기금심의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협의

제18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<u>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</u>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<u>때에는</u>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 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1조(공공부문) ① (생 략)

- ②<u>공공부문</u>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.
- 1. ~ 6. (생 략)

| 제 | 17 | 조( | 위원호 | 티의              | 기능 | 5) | 위원: | 회는 | 다 |
|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|---|
|   | 음  | 각  | 호의  | フ] <del>-</del> | 능과 | 역  | 할을  | 수행 | 한 |
|   | 다.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|   |

- 1.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및 평가
- 2.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
- 3.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
- 4. 에너지 행정의 민·관 협력 방 안 마련
- 5.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| 제18조(위원회의 | 회의) ( | <u> </u>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
| <br><u>위원장</u> |
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

| <u> 때</u> |  |  |
|-----------|--|--|
|           |  |  |

| <br> | <br> |  |
|------|------|--|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공공부문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<u>시장은 공공부문</u> ------
- -----.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• ④ (생 략)

제24조(건축부문) ① (생 략)

②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 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 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 관에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 략)

제6장 솔라시티기금 설치 및 에너지시책 추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

- 제25조(솔라시티기금 설치 및 조성 <삭 제> 운용) ① 시장은 솔라시티 조성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하여 솔라시티기금 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  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-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글
  - 2. 법인 · 단체 · 개인의 기부금
  - 3.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
  -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
  - 1.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

| ③・④ (현행과 같음    | $\left(\frac{2}{1}\right)$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4조(건축부문) ① (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|
| 2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<u>요청</u>                  |
| 할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~ ⑦ (현행과 길   | 달음)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6장 에너지시책      | 구진 관련                      |

지워

- 2. 솔라시티 조성을 촉진하기 위 하여 유치하는 공공기관・국내 외 기업・연구소・대학(원) 등 지원사업
- 3. 기금의 조성 ·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-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. 존치 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26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기금 | <삭 제> 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「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 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에 예탁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 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구광역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 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.

제27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 용 계획을 수립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.

제28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, 기금운용관은 솔라시티 관련 담당 실・국장, 기금출납원은 솔라시 티 관련 담당 사무관이 된다. ② 기금의 집행은「대구광역시 재 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<삭 제>

# 관계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 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### 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솔라시티 위원회를 유사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장 최혁규